

은 first, former의 뜻이므로 의역으로 되어 있다.⁷⁵⁾ stier는 **הִנֵּה**(the former things)은 ‘시작되기전’으로 번역됨으로 **תַּקְרֵב**(to sprout forth) ‘일어나기전’으로 번역함이 더 가까울 것 같다. 사실 많은 번역본들이(NIV, KJV, NASB, RSV, 일본어성경) ‘일어나기전’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성서는 ‘spring forth’의 의미를 죽아 ‘싹도트기전에’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절의 말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성령의 역사로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오시리라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미래의 큰 구원(the great salvation through the servant) 즉 새일(the New things)을 선지자가 고할 수 있게된 것이다고 했다.⁷⁶⁾ 42:9의 사역—보라! 전의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새일들을 선포한다. 그것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들게 할 것이다.

2) 제 2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파의 비교연구

3) 제 3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파의 비교연구

4) 제 4의 종의 노래와 한역성경파의 비교연구

〈생 語〉

(註) 75) KJV, RSV, Alexander, Barnes, Macrae 등은 “the former thing”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어성경과 TEV은 우리말의 ‘전에 예언한 일’의 뜻으로 되어 있다. F.Delitzsch는 first로 번역했다.(F.Delitzsch, op.cit., p.181). Hengstenberg는 Cyrus에 의해 포로된 자들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했다.(Hengstenberg, op.cit., p.224)

76) E.J. Young, op.cit., pp.123-124. 박윤선 박사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 예언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대인이라면 예언 성취의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일찍이 예언하셨던 것이 벌써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때에 예언되는 사람의 구원운동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요 13:19) “내가 새일을 고하노라”고 한 말씀은 1절~7절에 관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에 대하여 예고하신다는 말씀이다.(박윤선, op.cit., pp.401-402)

고려파의 形成과 조직

박 춘 동(제37회)

◆ 제일영도교회 강도사

A. 총노회의 조직

일제 하의 기간동안 한국교회가 범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므로 한국교회의 정화와 신앙의 순결을 통한 재건을 시도했면 慶南法統老會(고려파)는 도리어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말았음은 이미 言及한 바다.

36回 總會에서 실제적으로 절연을 당한 慶南法統老會는 1년이 지나도록 總會의 태도가 변함이 없자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모인 57回 老會에서 總老會 조직을 결의하고 목사 50명 장로 37명의 총대로 임시회장 이약신 목사 사회로 그날밤 대한예수교長老會總老會¹⁾를組織하였다. 임시회장 이약신 목사가 總老會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²⁾

趣旨: 현 대한 예수교 長老會 가설 총회는 본 장로회 정신을 떠나서 이교파적으로 허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참된 예수교 장로회 總會로 계승하기 위하여 總老會를組織함.

目的: 전통적인 대한 예수교 長老會 정신을 지지하는 전국교회를 규합하여 통괄하며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하여 法統總會를 장차 계승키로 함.

(註) 1) 총노회는 총회로 구성할 법적 노회의 성원이 안되므로 경남법통회, 경북지방회, 전라지방회를 구성하여 총회라 하고 6회(1956) 때부터 경남, 부산, 진주, 경북, 전라, 경기 6노회로 총회를 구성하였다.

2) 최제건, 신사참배와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에 관한 연구, (연대:연합신학원, 1974), p.118.

그리고는 새 임원을 선출했다. 회장 이약신, 부회장 한상동, 서기 홍준백, 회록서기 오병세, 회계 주영문, 부회계 김인식 제씨가 피선되었다.³⁾

그리고 오래동안 慶南老會에서 論難이 되었던 神社參拜한 죄를 자백하고 자숙하자는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상대자 : 목사 · 장로 · 남녀전도사
2. 기간 : 3주간 (9월 22 ~ 10월 12일)
3. 내용 : ① 공인죄 (神社參拜, 信徒聯盟加入, 미소기바라이)
② 자인죄
4. 방법 : 공예배 인도와 성례 주례와 공중기도 인도중

한편 3주간 자숙한 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그후 삼일교회당에서 總老會 발회식을 거행키로 하였다. 10월 16일 발회식 선포문을 낭독하기로 하고 그 起草委員長 송상석 목사의 보고를 정정하여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유념할 사실은 慶南法統老會가 임의로 總會를 이탈하여 또하나의 교단 설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리어 慶南老會와 總會全權委員會와 總會특별委員會가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송상석 목사는 總會의 불법적인 처사를 몇 가지만 지적한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⁴⁾

1. 총회의 불법처사

- 1) 총회의 불법계승이유는 남부대회로 소집하여 모인 후 각老會의 수의없이 남부총회로 행사하고 북한노회를 제외하였으니 남한 각노회만을 法統總會로 볼 수 없다.

2. 慶南老會에 대한 불법처사

- 1) 제 34회 총회시 순천노회가 문의한 고려신학교의 입학천서

(註) 3) 김의환 감수, 교회사 (세종문화사), p. 505.

4) “경남 34회 임시노회기”, 파수군 7호 (1951. 7. 부산고려출판사), pp. 15-16

사전은 해당 신학교에 대한 하등의 심의없이 행한 것으로 정치 14장 2조 2항과 3항을 무시한 처사이며 권징조례 79조, 75조와 82조의 위법처사이다.

- 2) 제 35회 총회가 老會경유없는 부산 불법집회인들의 소원장과 고소장과 진정서를 수리한 것은 총회규칙 제 5조 9항 위반이며 정치 제 12조와 90조 위반처사를 감행하면서 35回總會 석상에서 현장 범행한 긴급 기소장은 권징조례 제 48조와 (불온문서 살포) 제 76조에 해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不受理함은 慶南老會를 3分5 열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였은 즉 그 불법은 권징조례 제 77조에 해당하는 범과로 볼 수 있다.
- 3) 신앙신조를 어기고 헌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인들의 제출한 서류는 수리하여 논쟁을 일으켜 놓고 慶南老會 총대들에게는 言權을 빼앗고 변론을 못하게 한 것은 권징조례 제 81조와 93조에 위반된 불법 처사이다.
- 4) 제 35總會가 한부선 선교사와 관계하지 말라고 한 것은 1938년 평양서 개최된 제 27회 總會 결의와 정치 제 18장 2조 5항과 권징조례 제 4장 21조와 24조의 위반된 처사이다.
- 5) 재심청구를 결심하지 않는 것과 別委 결정에서도 고신은 정통이고 한부선 선교사와 관계하지 말라고 한 것은 總會가 잘 알지 못하고 행한 처사로 自認하였고
- 6) 이단과 신신학과 불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정통과 복음주의는 잘라내니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만을 가꾸려고 하는 셈인 줄 안다.
- 7) 제 36回 總會(대구집회)가 全權委員의 불법처사를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慶南老會는 진공으로 가정으로 (불법적으로 慶南老會는 엄연히 그대로 존속함) 別委員을 파송하여 老會의 병합분리를 행하라고 지시함을 불법처사임.
- 8) 제 36회 총회속회 (부산 중앙교회회집) 시 別委員이 불법 조직한 소위 합동노회 조직보고는 받고 法統老會의 초대전은 불허한 일.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불법적인 처사가 계속되고 있고 1951년 제36회 총회에서 정식 제거되므로 별도로 총노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 고려파는 소위 정통과 전통, 법통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통이란 신학적 의미에서 정통주의를 지칭함이고 전통이란 神社參拜문제 이전에 정해진 長老會의 신조와 정치, 명칭교리와 신앙이 이교파로 흘렀으므로 자파가 전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므로 조직적 구조적인 면에서 전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신측이 총회의 회수의 기점을 1952년부터 하는 것만으로도 자명하다.

B. 각 노회의 조직⁵⁾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모였던 제57회 老會에서 총노회조직을 결의하고 당일 총노회가 조직된 것은 이미 기술한 바이며 이 날 조직된 제1회 총로회의 행정구역은 慶南老會 뿐이었으나 지역적 관할을 위하여 산하에 대구지방회, 경주지방회, 전라지방회를 두었다. 그러다가 1953년 3월 부산 삼일교회에서 회집된 제2회 총로회에서 경북노회조직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5월 19일 대구 서문로교회에서 경북노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경북노회를 필두로 1956년까지 6개노회가 조직되고 동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고려측) 總會가 역사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1954년 3월 부산 남교회당에서 회집되었던 제3회 총로회에서 의결에 의해 동년 11월에는 경기노회와 전라노회가 조직되었다. 또 1956년 4월 부산 남교회당에서 모였던 제5회 총로회의는 경남노회를 삼분하여 부산노회와 진주노회로 분리하기로 한 결정에 의하여 동년 6월 5일 부산노회가 조직되어, 1952년 총로회가 조직

(註) 5) 본 항은 주로 고신측 총회록에 의존하여 정리함.

된 후 4년이 지나서 6개 老會로 확장, 조직되었고, 동년(1956년) 9월 20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6개 老會 곧 경남, 부산, 진주, 경북, 전라, 경기노회 총대 목사 52명의 長老 43명 계 95명이 모여 역사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총회회수는 568개였고 세례교인수는 15,350명이었다. 그리고 목사의 수는 111명이였다.

그 다음해인 1957년 9월에 열린 제7회 總會에서는 김영진 목사를 대만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여 1958년 5월 13일 김목사는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다.

C. 승동측파의 합동

1959년 대한예수교 長老會 제44회 총회에서 소위 “연동측”과 “승동측”이 분열되자 신학과 신앙노선이 같은 승동측파 고신측은 합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하였다. 1960년 9월 20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모인 제10회 總會는 승동측파의 합동을 추진키로 정식 결의하였다. 1960년 9월 하순에 양측은 합동 연구위원을 선출하고 양측 위원들은 10월 중순에 대전 중앙교회에 위원 19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니 승동측 위원장은 “양화석” 목사요, 고신측 위원장은 “황철도” 목사였다.

여기에서 1 대 1로 합동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합동안을 결정했다.⁶⁾

(1) 합동 원칙

① 신조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여 대한예수교 長老會 현 법이 명시한 12신조

② 신학 : 칼빈주의신학에 의하여 합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동 방안

(註) 6) 총회록 (제 1회 ~ 10회), pp. 283-288.

- ① 헌법수정 : 수정위원을 양측 각 5인씩 선출하여 헌법수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에 필요한 최소한 헌법 시정과 규칙을 작성하여 總會에 제안토록 한다.
 - ② 교리, 정치, 생활은 헌법과 예배 모범과 권징조례를 염수한다.
 - ③ 신학교일원화 : 신학교는 종회직영의 단일 신학교로 하고, 동수의 이사를 선출하여 경영케 한다.
 - ④ 사업은 양측 현상대로 수락함.
 - ⑤ 외국 선교사는 양측 현상대로 수락한다.
- (3) 합동 방식
금년내로 합동총회로 모이고 전 總會에 헌법수정 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공포하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 (4) 합동 시일
12월 13일 화요일

그리고 합동總會 절차 위원으로는 양측 總會長 서기, 합동위원장 서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W.C.C를 탈퇴하고 W.C.C 노선의 에큐메니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었다.⁷⁾ 1960년 12월 13일 제 10회 2차의 속회(고신측)가 서울 홍천교회에서 목사 64명, 장로 55명이 참석하여 개회했다. 합동문제에 관한 각 老會가 수의한 결과는 가 180표, 부 8표, 기권 2표로 나타났으며 2차 속회는 합동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역사적인 합동총회가 1960년 12월 13일 오후 6시30분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대표들의 합동조인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배가 끝난 후 대회장은 박수로 진동했고 6시 45분 예장 總會長 고성모 목사의 사회로 회무를 진행하여 양측 총대를 호명하니 고신측 131명, 예장승동측 233명, 합 364명으로 성수가 되어 개회선언을 했다. 합동위원회 합동원칙을 정규오 목사의 보고로 채택하고, 취지와 선서문은 고신측 전성도 목사의 보고로 채택하고, 양측 總會長 고성모 목사와 송상석 목사가 등단하니, 회원일동이 기

(註) 7) 김의환,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68), p.571.

립하여 염숙히 조인한 후 양 總會長이 악수하고 어깨를 껴안자 장내는 박수 갈채와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렸다.

증경 總會長 이대영, 이인식, 한상동 목사의 간곡한 기도가 있은 후 14일 오후 2시에는 환영회가 있었고 14일 오후 3시에는 한부선, 현요한, 마두원 선교사의 축사가 있었다.⁸⁾ 그리고 제 46회 총회가 1961년 9월 21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개최되어 목사총대 101명, 장로 92명, 선교사 2명, 합 192명이 회집하여 임원을 선출한 결과 한상동 목사가 회장에 재선되었다.

D. 고신측 환원과 그 이후

1960년 12월 13일에 승동측과 합동했던 고신측은 1963년 9월 17일 부산 남교회당에서 환원總會로 모임으로서 합동한지 34개월 만에 환원하고 말았다.

고신 지도자들이 총회내막을 살피며 상대방의 처사를 볼 때 심상찮은 짐새를 느끼게 되었다. 합동후 總會는 합동서약을 위반하여 합동정신과 이념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고신이 지켜온 신앙선과 위배된 길을 總會가 가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정통 신학교육과 경건생활을 위해 합동전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慶南老會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합동원칙과 선언문 파괴라고 하였다.⁹⁾

- ① 신학교는 일원적으로 하고 이사는 양측 동수로 하기로 했으나 불법적으로 단일화 결의를 하고 고신을 폐합하여 고신측 이사수는 놓고 한 것.

(註) 8) 한부선 - 미국 정통 장로교 선교사
현요한 - 미국 성경 장로교 세계 선교부 대표
마두원 - 미국 성경 장로교 독립선교부 대표
파수군 106호 (1961), p.40.

9) "합동총회에 대한 호소 - 경남 (법통) 노회 질의와 해명을 공개함" (1961) 중에서 요약함.

- ② 합동절차 위원에 일임하여 합동 취지문을 총회에 보고, 채택 키로 했으나 사문화시킨 것.
- ③ 慶南은 고신측 老會 구역과 명청에 의하여 합동하고 그외는 예장측 노회구역과 명청에 의하여 합동하기로 했으나 고신측 부산노회와 慶南老會가 합동함에 있어서 예장측 慶南老會 명청과 구역대로 한 것.
- ④ 고신측의 10 회의 總會 기간시는 대한예수교 長老會 이원적 인 사실로 수록한다고 했으나 고신측의 것은 빼버린 것.
- ⑤ 제정된 교리, 신학, 신앙 등의 문제는 전원의 놓의 거부된 행사로 앞으로 10년간 실시키로 해놓고 고신 폐합의 놓의 거부권과 10년 유효기를 불문에 부치고 처리한 것 등을 지적하고 헌법과 규정을 떠난 다수 폭정을 규탄하였고 신앙경 전과 신학보수와 기독교의 행동원리를 세움에 대하여 비위점들을 지탄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1962년 10월 17일에 고려신학교 복교를 선언했고, 12월 18일에는 복교후 5명을 졸업시켰다. 고려신학교의 복교를 막아보려는 여러가지 반대운동을 꾸렸지만 이미 선언한 복교는 막을 수가 없었다.

동년 12월 18일에 서울에서 수학했던 졸업생들이 부산에 내려와 수업을 받게 되었다.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 등 세박사는 고려신학교를 위해 동사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같은 형편에서 1963년 6월 總會 고시부에서는 고려신학교 제 17회 졸업생들에게 강도사 고시 자격을 허락치 않음으로 문제는 심각하게 되었다. 동년 8월 8일에 부산老會에서 고신에 속한 목사 23명, 장로 21명이 부산 남교회당에 회집하여 부산노회 환원을 결정하였다.

9월 3일에는 경북노회가 환원하였고, 9월 4일에는 경기노회가 환원하였고, 9월 10일에는 慶南老會를 위시한 교회들이 각각 환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 9월 17일에 부산 남교회당에서 목사 36명, 장로 36명, 합계 72명으로 대한예수교 長老會 제 13회 환원

총회가 회집하게 된 것이다.

이 날 총회에서 송상석 목사가 總會長으로 선출되었고, 이때 교세는 다음과 같았다.¹⁰⁾

교회교인수	노회	부산	경남	경북	진주	경기	경동	전라
교회 수		131	175	183	311	140	117	20
환원 교회 수		72	163	70		85	20	
세례교인수		2,900	3,000	1,500	1,100	623	623	500

이렇게 두 보수 교단이 합동했다가 재분리함으로서 한국교계에 미친 충격도 커지만, 고신측은 환원하므로 이전의 교세의 놓을 읊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다.

환원 이후 고신은 정치적인 여러 문제로 진통이 없지 않았으나 많은 성장을 가져왔고, 신학교도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64년 9월에 總會 직영 신학교로 總會가 받아 들였다. 1968년 2월 28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대학에 준한 각종 학교인가를 취득하였다. 1970년 12월 30일에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고려신학대학 설치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신학교는 폐쇄되고 신학대학이 된 것이다. 1972년 3월 17일 한상동 목사는 화란 카펜신학교 이사화와 교수회의 공동 초청으로 화란을 방문하게 되었고 신학대학 신축자금을 모금하였다. 귀국 후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당시 이사회의 블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지연이 되었고 화란 정부에서 보내주기로 약속된 기금은 기각되고 화란 성도들의 혼금만 오게 되었다. 건축기금의 부족으로 국내 성도들께 호소한 바 놀라운 혼금이 쏟아져 전평 1,700명의 현대식 교사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註] 10) 개혁주의 46호 (1971. 2), p.9.

이상규, 고려파 교회 성장에 관한 통계자료 (미간행 자료, 1982), p.5.

한상동 목사는 1975년 8월 18일 고려신학대학 춘공식 예배의 설교로써 그의 공적 강도시간을 종식하게 되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끝내고 1976년 1월 6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다.

약 30여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고신은 이 땅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기며 지금까지 유지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제32차 총회에서는 지난 1975년 분립되었던 경남지방 중심의 반고소파 150여 교회가 영입되므로 한국 교회사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전통을 남겨 준 것은 특기할 일이라고 하겠다. ♣

‘골로새 이단’에 관한 주석적 고찰

원 3년 윤 원 환

1. 문제의 논거

골로 새 서신에서 대두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비복음적 교훈을 바울에게 알리려웠다고 볼 수 있는 이 종교적 거짓교훈의 형태가 무엇이며 그들의 주장점과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¹⁾ 그러나 이 교훈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모든 가정적 주장들과 사고들에 기인한 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성격을 나타낼 수는 없다.²⁾ 그 이유는 우리가 ‘골로새 이단’³⁾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⁴⁾ 단지 단편적으로 바울이 사용한 공격적인 용어가 취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용어는 연구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⁵⁾ 결국 이 이단에 관한 모든 성격규명은 이 서신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바울의 언급에서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항해서 기독교 진리의 특별한 관점에서 그 대응책을 강조한 언급에서 추론되어 질 수

[註] 1) H. C. G. Moule, *Colossian and Philemon Studies* (Pennsylvani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5), p. 7.

2) H. Ridderbos, *Aan de Koloszenzen* (Kampen: N. V.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1960), p. 104.

3) 거의 모든 학자들이 ‘*Colossian heresy*’로 부른다.

4a) F. F. Bruc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p. 165.

4b) Ernst Lohmeyer, *Die Briefe und die philipper, Kolosser und an Philemon*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p. 40.